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2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민선6기 「함께하는 충북, 행복한 도민」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기구 개편에 따라
- 정원조례상 총 정원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안업무와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,
- 유사기능 통·폐합에 의한 인력 감축과 농산물 보급종자 업무의 국가 환원에 따른 인력 조정 및 청원·청주통합추진단 폐지 등 감축 요인을 반영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: 변동 없음 3,206명 (안 제2조)
  - 집행기관의 정원: 1,542명 → 1,541명 (△1명)
  -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: 42명 → 43명(+1명)

○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(안 별표 2)

- 일반직공무원 비율 조정

- 8·9급 10% 이상 → 9.5% 이상(△0.5%)
- 전문경력관 1% 이내 → 1.5% 이내(+0.5%)

○ 직급·직종별 정원조정 내역 (안 별표 3)

- 일반직: △3명 (3급 △1명, 5급이하 △12명, 전문경력관 +10명)
- 연구직: +1명 (연구사 +1명)
- 지도직: +1명 (지도사 +1명)
- 교육직: +1명 (조교 +1명)

## 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「함께하는 충북, 행복한 도민」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조례상 총 정원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규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사항 등을 반영하고, 유사기능 통·폐합에 따른 인력 감축과 농수산물 보급종자 업무의 국가 환원에 따른 인력조정 및 청원·청주통합추진단 폐지 등 감축요인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 내용은,

정원의 변동없이 집행기관의 정원을 1,541명으로 1명 감축하고,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43명으로 1명 증원하며,

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일반직공무원 비율에서 8·9급 10% 이상을 9.5% 이상으로 0.5% 감원하며, 전문경력관 1% 이내를 1.5% 이내로 0.5% 증원하고,

직급·직종별 정원조정에 있어서 일반직 3명을 감축하고, 연구직, 지도직, 교육직을 각 1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